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 : 2013. 11. 28.

발 의 자 : 서종수 위원 외 6인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확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월 2,397,500원으로 함. (안 제3조제2항)

3. 관련법규

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2014년도 예산편성(안) 반영

6. 입법예고 : 필요

7. 기타사항

총무과-3138호 (2013.10.31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통보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월 2,263,000원” 을 “월 2,397,500원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월정수당) ① (생략)</p> <p>② 월정수당은 월 2,263,000원으로 한다. 다만,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월정수당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월 2,397,500원-----</p> <p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